



마이크로소프트 상호적 라이선스

본 라이선스는 동봉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적용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본 라이선스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1 조. 정의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복제”, “파생 저작물”, “배포”라는 용어의 의미는 미국 저작권법에 정의된 의미를 따른다.

“기여물”이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을 의미한다.

“기여자”란 본 라이선스에 의해 자신의 기여물을 배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이선스된 특허”란 기여자의 기여물에 직접 씌어 있는(that read directly) 기여자의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제 2 조. 권리의 부여

(A) 저작권 부여- 제 3 조의 라이선스 조건과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에 의해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기여물을 복제하고, 기여물의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고, 기여물이나 당신이 생성하는 파생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B) 특허 부여- 제 3 조의 라이선스 조건과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에 의해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라이선스된 특허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여자의 기여물이나 그 기여물의 파생저작물을 제조, 주문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제 3 조. 조건과 제한 사항

(A) 상호적 부여 - 당신이 배포하는 파일로서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식으로) 포함하는 파일에 대하여, 당신은 수취인에게 해당 파일에 대한 소스코드와 본 라이선스의 사본 1 부를 제공해야 한다. 이 라이선스가 해당 파일에 적용될 것이다.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의 독자적 저작물이며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파일들을 당신이 선택한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설정할 수 있다.

(B) 비(非)상표 라이선스 - 본 라이선스는 당신에게 기여자의 이름이나 로고,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C) 당신이 어떤 기여자를 상대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여자에 의해 당신에게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D)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배포하는 경우, 당신은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모든 저작권과 특허, 상표 및 귀속 고지를 유지해야 한다.

(E)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소스코드 형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당신은 반드시 본 라이선스에 따라, 본 라이선스의 완전한 사본을 배포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컴파일된 형식이나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는 본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라이선스에 의해서만 배포가 허용된다.

(F)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라이선스 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당신이 부담한다. 기여자들은 어떠한 명시적인 보증이나 보장, 조건도 제공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지방법에 의해 추가적인 소비자 권리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본 라이선스에 의해 바뀔 수 없다. 당신의 지방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기여자들은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한다.